

행정자치부

시정·주의 요구

제 목 ○○회의록 등 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, 중구, 영도구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,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고,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·분류·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생산의무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, 개최기관, 일시 및 장소,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, 진행순서, 상정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,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고,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,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

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,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(○○○○○실)에서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에 따라 ‘○○위원회’를 53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,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.

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(○○과)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에 따라 ‘○○위원회’를 10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,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.

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라 ‘영도구의회 ○○회’를 26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,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, 중구청장, 영도구청장은

[시정] 기존에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한 회의록 등은 임의의 수기대장으로 관리하지 말고,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원안 제목으로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